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673호

2021.5.3.(월)



서울특별시

목 차**◆ 고 시**

제2021-219호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콜센터 등 방역조치 고시 2
제2021-221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22
제2021-222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유지에 따른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방역조치 고시 30
제2021-223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통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34
제2021-224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고시 41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9호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콜센터 등 방역조치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기간 : '21년 5월 3일(월) 0시 ~ '21년 5월 23일(일) 24시

2. 대상

- 서울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
- 서울시 소재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등
 - * ①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종합소매업
 - ②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도매업 제외)
 - (예 : 대형마트, 특정 품목(의류·가전·가전용품·서적 등)에 특화한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공구·아파트 상가 등 그 밖의 대규모점포)
- 서울시 소재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및 보험회사 전화영업점(대리점)

3. 내용 :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노래연습장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단계별 (2단계)	① 운영시간, 이용인원 등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4㎡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안내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코인노래연습장 4㎡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시설별 또는 별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출입지명부 작성 ·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제외 가능 ** 수기명부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수기명부 불가
	④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⑥ 손씻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소독하기(권고)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유지 	
	⑧ 환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분 이상, 대장작성) * 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간 환기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p>⑨ 소독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1회 이상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대장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손님이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종료 직후 소독 	
	<p>⑩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추가 수칙	<p>① 마이크 사용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PC방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단계별 (2단계)	<p>① 이용인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p>② 방역수칙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준수
	<p>③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공통 수칙	<p>④ 마스크 착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p>④ 음식섭취 금지</p> <p>■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p>	<p>■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p>
	<p>⑤ 손씻기</p> <p>■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p>	<p>■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p>
	<p>⑥ 환기하기</p> <p>■ 일 3회 이상 시설 환기(대장작성)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p>	
	<p>⑦ 소독하기</p> <p>■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p>	
	<p>⑧ 기타</p> <p>■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p>	
추가 수칙	<p>① 이용시간 제한 강력 권고</p> <p>■ 1인 2시간 이내 사용제한 강력 권고 안내</p>	<p>■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p>
	<p>② 공용공간</p> <p>■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p>	<p>■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p>
서울시 강화 조치	<p>① 출입자명부 작성 · 관리</p> <p>■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허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 번호 확인)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p>	<p>■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 예외적으로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p>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p>② 기타</p> <p>■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2명 이내로 제한 권고 *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 수 제한 표시</p> <p>■ 좌석구분 칸막이는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일 것(예. 앉은 시선 높이)</p> <p>■ 손님이 이용한 좌석은 테이블,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등 소독 후 재사용</p>	<p>■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2명 이내로 제한 권고</p>

□ 영화관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단계별 (2단계)	<p>① 이용인원 등</p> <p>■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p>	<p>■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p>
	<p>① 방역수칙 준수</p> <p>■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p>	<p>■ 방역수칙 준수</p>
	<p>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p> <p>■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p>	<p>■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p>
	<p>③ 마스크 착용</p> <p>■ 관리자 ·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p>	<p>■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p>
	<p>④ 음식섭취 금지</p> <p>■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 둘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p>	<p>■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 둘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p>
	<p>⑤ 손씻기</p> <p>■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p>	<p>■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 하기 (권고)</p>
공통 수칙	<p>⑥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p> <p>■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p>	<p>■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p>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p>⑦ 환기하기</p> <p>■ 영화상영 또는 공연 전후 환기(대장작성)</p> <p>⑧ 소독하기</p> <p>■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p> <p>⑨ 기타</p> <p>■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뒤근 조치(대장작성) ■ 화장실 등 시설 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p>	
추가 수칙	<p>① 상영관 외부</p> <p>■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p> <p>*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p>	<p>■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취식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p> <p>*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p>
서울시 강화 조치	<p>① 출입지명부 작성 · 관리</p> <p>■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허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확인)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및 안내</p> <p>■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p> <p>② 기타</p> <p>■ 매표소, 매점, 대기공간 등 이동 시 거리두기 * 고객 이동동선을 바닥에 스티커 등으로 표시</p> <p>■ 출구와 입구 동선 구분</p>	<p>■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p> <p>**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예외적으로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p>

오락실 · 멀티방 등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단계별 (2단계)	① 이용인원 등	
	■ 이용인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제한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②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③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 ·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공통 수칙	⑥ 손씻기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단계별 이용 가능 인원 제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이용인원 제한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⑧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개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상시 기계환기시설 원비 시 10분, 대장작성)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서울시 강화 조치	⑧ 소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1회 이상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대장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멀티방은 퇴실 후 소독 	
서울시 강화 조치	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서울시 강화 조치	① 출입자명부 작성 ·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적으로 수기출입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서울시 강화 조치	②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2명 이내로 제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 수 제한 표시 ■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2명 이내로 제한 권고

직업훈련기관(일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단계별 (2단계)	<p>① 이용인원 등</p> <p>①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①, ②안 중 선택</p>	<p>①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②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①, ②안 중 선택</p>
공통 수칙	<p>① 방역수칙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p>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p>③ 마스크 착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p>④ 음식섭취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섭취 금지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p>⑤ 손씻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p>⑥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p>⑦ 환기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계시 *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p>■ 방역수칙 준수</p> <p>■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p> <p>■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p> <p>■ 음식섭취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p> <p>■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 (권고) </p> <p>■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p>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p>⑧ 소독하기</p> <p>■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p>	
	<p>⑨ 기타</p> <p>■ 방역관리자 지정 · 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p>	
추가 수칙	<p>① 전일제 경우 식사</p> <p>■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 · 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p>	
	<p>② 샤워실, 탈의실이 있는 경우</p> <p>■ 공용공간 수칙 적용</p>	
서울시 강화 조치	<p>① 출입자명부 작성 · 관리</p> <p>■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허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확인)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p>	<p>■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 예외적으로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p>
	<p>② 기타</p> <p>■ 수료기준에 맞는 훈련생 조기 종강 권고</p>	

직업훈련기관(기숙형)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단계별 (2단계)	<p>① 이용인원 등</p> <p>①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①, ②안 중 선택 ※ 이용인원 계시 및 안내 의무는 삭제</p>	<p>①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②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①, ②안 중 선택</p>
공통 수칙	<p>① 방역수칙 준수</p> <p>■ 방역수칙 계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p>	<p>■ 방역수칙 준수</p>
	<p>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p> <p>■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p>	<p>■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p>
	<p>③ 마스크 착용</p> <p>■ 관리자·종사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p>	<p>■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p>
	<p>④ 음식섭취 금지</p> <p>■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p>	<p>■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p>
	<p>⑤ 손씻기</p> <p>■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p>	<p>■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 (권고)</p>
	<p>⑥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p> <p>■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p>	<p>■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p>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p>⑦ 환기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계시 *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p>⑧ 소독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1회 이상 소독(시설별 차등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p>⑨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관리자 지정 · 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p>① 입소자, 종사자, 방문자에 대한 권고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자 외출 및 충간 이동 자체 안내 ■ 방문자 시설 출입 자체 안내 <p>② 샤워실, 탈의실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공간 수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자 외출 및 충간 이동 자체 ■ 방문자 시설 출입 자체
추가 수칙	<p>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체,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 운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 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 마스크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충간 이동 자체, 공용 공간(샤워실 · 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p>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p> <p>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 이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운영하는 경우, 이용 가능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서울시 강화 조치	<p>① 출입자명부 작성 ·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 번호 확인)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적으로 수기출입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p>②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기준에 맞는 훈련생 조기 종강 권고 	
공통 수칙	<p>① 방역수칙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준수
	<p>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p>③ 마스크 착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 종사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p>④ 손씻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소독하기(권고) 또는 손 씻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
	<p>⑤ 환기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시설의 경우,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영업시간 중 상시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p>⑥ 소독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3회 이상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쇼핑용카트) 등 	
	<p>⑦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뒤근 조치(대장작성) 	
추가 수칙	<p>① 공용공간 등 방역수칙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p>②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사용금지 	
	<p>③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하지 않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금지 	
	<p>④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방역 수칙 적용 ■ 식당, 카페 등의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대형유통시설(3,000m² 이상 규모)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p>① 방역수칙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p>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p>③ 마스크 착용</p> <p>■ 관리자·종사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p>	<p>■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p>
	<p>④ 손씻기</p> <p>■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p>	<p>■ 손 소독하기(권고) 또는 손 씻기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p>
	<p>⑤ 환기하기</p> <p>■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개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창문, 출입문 등 상시 개방(권고)</p>	
	<p>⑥ 소독하기</p> <p>■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쇼핑용카트) 등</p>	
	<p>⑦ 기타</p> <p>■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p>	
서울시 강화 조치	<p>① 기타(2단계시 적용사항)</p> <p>■ 시식시음 서비스 운영 금지</p>	

콜센터

구분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p>① 방역수칙 준수(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준수
	<p>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p>③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자명부 작성·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등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등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공통 수칙	<p>④ 마스크 착용(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업장 상황에 맞게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확보 및 비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p>⑤ 음식섭취 자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체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체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p>⑥ 손씻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구분	방역관리자 · 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 · 방문자 수칙
	<p>⑦ 밀집도 완화(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운영대장 작성) *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점심시간 시차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 식사시간 준수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p>⑧ 환기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개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 작업 중 지정된 시간에 환기 후 근무
	<p>⑨ 소독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1회 이상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대장 작성 * 공용책자, 공용물품(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사무용기기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별 사무공간(책상 등)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용물품(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소독 후 사용하기
	<p>⑩ 기타(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관리자 지정 · 운영 ■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대장작성)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근 또는 출근자제

구분	방역관리자 · 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 · 방문자 수칙
추가 수칙	① 근무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기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특성 상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기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휴게시간 이용
	②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출장,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 최소화,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실시 ■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개최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안내 ■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 최소화 하기,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참여 ■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체
	③ 구내식당, 통근버스, 기숙사, 시설내 공용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방역수칙 준수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방역수칙 준수
	④ 기타(2단계시 적용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2 권고 ■ 일 2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권고(일 1회 이상 의무) ■ 근로자 간 칸막이는 90cm 높이 이상 설치 ■ 휴게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 이용제한 권고 ■ 단체식사 및 대면교육 제한 권고 ■ 환기(매 2시간), 소독(물품 등 일 2회, 전체사업장 주1회 이상) 실시 권고 	
서울시 강화 조치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대화 금지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체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대화 자체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체
탕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4. 위반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5.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5월 3일 0시 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노래연습장 02-2133-5238,
PC방·오락실 02-2133-5242, 영화관·멀티방 02-2133-5236,
대형유통시설 02-2133-5258, 콜센터 02-2133-5243),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직업훈련기관 02-2133-546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21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2021.5.3.)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기간: ' 21. 5. 3.(월) 0시 ~ 5. 23.(일) 24시
2. 대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경고,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5. 업종별 방역수칙

①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p>①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p>	<p>①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 * 고령자, 2G폰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불가 시 예외적으로 <u>본인확인(신분증 제시)</u> 후 수기명부 작성 가능 *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p>
<p>②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 고령자, 2G폰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불가 시 예외적으로 <u>본인확인(신분증 제시)</u> 후 수기명부 작성 가능 *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p>	<p>②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p>
<p>③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p>	<p>③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강력 권고) *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p>
<p>④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 다만, 횟수권 할인구매는 가능</p>	<p>④ 평상, 공용음료컵 사용금지 * 1인용 의자 사용 가능(최소1m 거리유지)</p>
<p>⑤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 권고) 및 안내판 게시 *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p>	<p>⑤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p>
<p>⑥ 이용자의 평상 및 공용음료컵 사용금지 * 1인용 의자 비치 가능(최소1m 거리유지)</p>	<p>⑥ 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p>
<p>⑦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p>	<p>⑦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p>
<p>⑧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p>	<p>⑧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인원 제한 준수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p>
<p>⑨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금지</p>	<p>⑨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p>
<p>⑩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소독대장작성)</p>	<p>⑩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p>
<p>⑪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찜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p>	
<p>⑫ 방역관리자 지정</p>	
<p>⑬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p>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⑭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계시	
⑯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을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⑯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계시 및 안내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⑰ 샤워시설, 옷장 한 칸 띄어 사용 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⑯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⑯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⑯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 '이용자' 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② 이 · 미용업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④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종사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 섭취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 섭취 금지
⑥ 손씻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종사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⑧ 환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계시 * 지하, 청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⑨ 소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1회 이상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⑪ 손님 예약제 운영		
⑫ 손님 음료 제공 금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추가 수칙	<p>① 대화자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 종사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도나 메이크업,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체,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 추가 적용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인원 제한(시설신고허가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앉기

※ ‘이용자’ 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③ 숙박업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p>① 방역수칙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준수
	<p>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p>③ 마스크 착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종사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공통 수칙	<p>④ 손씻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p>⑤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공간 내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p>⑥ 환기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객실) 퇴실 후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내 수시 환기
	<p>⑦ 소독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퇴실 후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용공간) 일 1회 이상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대장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p>⑧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추가 수칙	<p>①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 <p>②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 추가 적용 수칙	<p>①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p>②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p>③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②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③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이용 금지

※ '이용자' 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대화 금지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체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대화 자체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체
당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6.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호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년 5월 3일 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22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유지에 따른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방역조치 고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집합제한 조치)를 3주간 연장함에 따라 특수판매업(방문판매 · 후원방문 · 다단계)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방역조치 안내사항 개요

- 대상 :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장소
- 기간 : 2021. 5. 3.(월) 0시부터 ~ 2021. 5. 23.(일) 24시
- 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방역수칙) 조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기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공통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종사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p>⑤ 음식제공 및 섭취 금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 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
	<p>⑥ 손씻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p>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유지 	
	<p>⑧ 환기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계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p>⑨ 소독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1회 이상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p>⑩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p>⑪ 시설 내 공용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추가 적용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대화 금지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체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대화 자체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체
당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2.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의2호~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부과사유 : 특수판매업체 시설에서의 감염병(코로나19 등)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이행 의무부과

다.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라. 부과대상 : 서울시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미준수자(관리자·운영자·이용자)

마. 부과금액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150만원(1차), 300만원(2차) 부과
-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바. 효력발생일 : 2021. 5. 3.(월) 0시 부터

사. 불복절차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고발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23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홀덤펍, 식당·카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집합금지 조치

- 기간 : 2021년 5월 3일(월) 0시 ~ 2021년 5월 23일(일) 24시, (3주)
- 대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홀덤펍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 위반 시 조치사항
 - ①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조치(벌금300만원 이하)
 - ②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간 : 2021년 5월 3일(월) 0시 ~ 2021년 5월 23일(일) 24시, (3주)
- 대상 : 서울시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돌잔치전문점
- 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¹⁾ 준수의무화)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기본 2주)
 -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벌금 300만원 이하)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10만원)
 - ③ 3개월 이내 시설 운영중단 명령

1) 별임1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

- ▶ 시설 관리자 ·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경고,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 ④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3. 영업형태 정의

- 홀덤펍
 -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 · 음료 · 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 돌잔치전문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 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마스크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에 따름
 ※ 5인이상 사적모임, 행사 등 금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집합 · 모임 ·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에 따름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5월 3일 0시부터

6.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1부. 끝.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별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④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⑤ 손씻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⑥ 밀집도 원화(단계별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⑦ 환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⑧ 소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대장작성) 	
	① 이용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추가 수칙	② 춤추기, 음악소리, 테이블 이동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p>③ 공용집게 사용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집게 · 접시 ·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p>④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의일 05시까지 포장 · 배달만 가능 ■ 영업장 내 설치 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 공연자 마스크 착용 · 공연자는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1인 공연 즉시 마이크 캡 교체 · 노래 부르기 등 공연 간 시간간격 유지 (30분 공연 후 30분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집게 · 접시 ·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의일 05시까지 포장 · 배달만 이용 ■ 영업장 내 설치 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 아래 방역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자 마스크 착용 · 공연자는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노래 부르기 등 공연 간 시간간격 유지 (30분 공연 후 30분간 금지) 	

② 돌잔치전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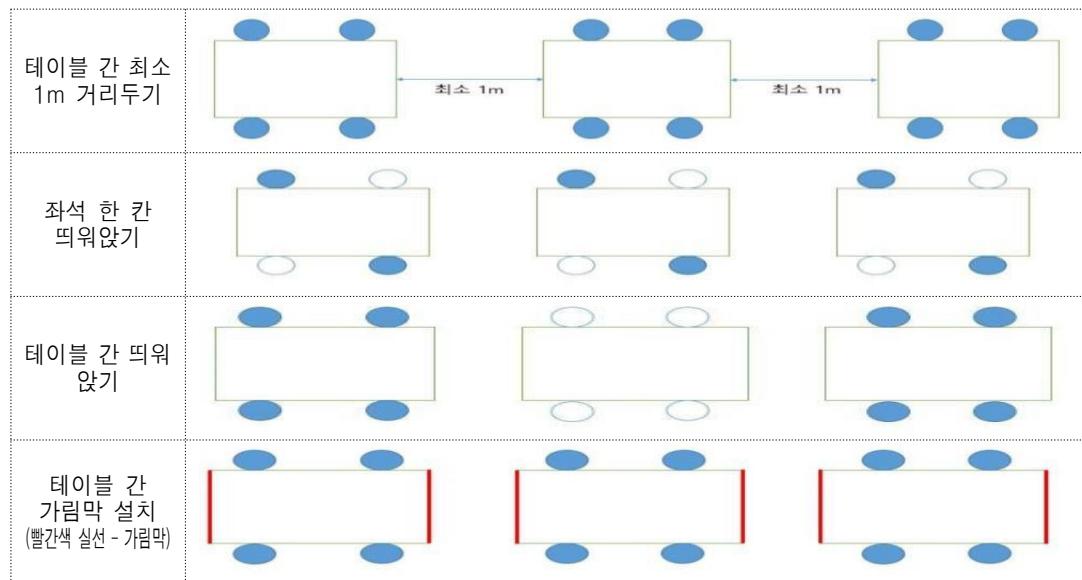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 기념촬영(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 시예만 잠시 미착용 허용 (그 외 대화시 등에는 반드시 착용) 	■ 행사주관 부모 포함 모든 참석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 기념촬영(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 시예만 잠시 미착용(그 외 대화시 등에는 반드시 착용)
	⑤ 손씻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p>⑤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돌잔치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유지 <p>⑥ 환기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계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p>⑦ 소독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p>⑧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돌잔치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준수 ■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유지
추가 수칙	<p>① 식사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착석하고 테이블 간 이동자제 안내 <p>■ 뷔페의 경우 공용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정감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 ■ 착석하고 테이블 간 이동자제 <p>■ 뷔페의 경우 공용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정감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p>
	<p>■ 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p>	<p>■ 식사 시 대화 자제</p>
	<p>② 만남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지인 간 신체 접촉(악수 등) 자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 시 마스크 착용 ■ 지인 간 신체 접촉(악수 등) 자제
	<p>③ 시설 내 공용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실, 화장실, 휴게실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대화 금지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체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대화 자체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체
탕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 좌석 도식도(예) >



* 테이블은 몇인용인지, 모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테이블을 의미하며, 가림막은 높이 90cm 이상, 길이는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것 사용 권장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24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고시**

’ 21.4.30. 정부는 그간 수도권에서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49조제3항, 제83조제2항 및 제4 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종교시설(교회, 사찰, 성당 등)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기간 : 2021년 5월 3일(월) 0시~2021년 5월 23일(일) 24시
2. 고시대상 : 서울특별시 관내 종교시설(교회, 사찰, 성당 등 모든 종교시설)
3. 고시내용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공동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1.5단계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제공 금지 및 섭취 금지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 섭취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주 가 수 칙	⑥ 손씻기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 수칙 준수하여 참여
	⑧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종교행사 전/후 반드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계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⑨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종교행사 전/후 반드시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책자,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⑩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① 비밀발생(침 텁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독창 제외) 금지 안내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독창 제외) 금지
	② 공용물품 등 제공금지 ■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③ 시설 내 공용 장소 ■ 휴게실, 탕비실,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4. 위반 시 조치사항

-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5. 법적근거(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의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등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5월 3일 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담당자 : 문화정책과 도근호 주무관(02-2133-2522)
- 담당자 : 문화정책과 유은혜 주무관(02-2133-2532)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